

# 서울특별시 용산구 「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」 수탁자 공개모집 재공고
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,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7조(업무의 위탁)에 따라 「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」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0. 9. 1.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

## 1. 위탁대상 시설 :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

가. 시설명 :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

나. 시설의 종류 :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

다. 소재지 : 용산구 한강로3가 63-70, F동 2층(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內)

라. 규모 : 294.63㎡ (89.13평)

마. 개관 예정일 : 2020. 10월 중

바. 이용대상(예정) : 7~10세 아동 ※ 시범운영 후 확정

사. 정원(예정) : 36명/1회 ※ 시범운영 후 확정

아. 공간구성

구분	아동 놀이공간	사무실	출입구	수유실	사물함실	창고
면적	253.42㎡	26.28㎡	14.93㎡	16.55㎡	9.8㎡	2.41㎡
비고	실내놀이터 전용공간	용산 공동육아나눔터와 공동사용 (실내놀이터 공간에 합산)		용산 공동육아나눔터와 공동사용 (공동육아나눔터 공간에 합산)		

자. 실내놀이터 주요사업

-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
-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
-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-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

2.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(2020. 10. 5. ~ 2025. 10. 4.)

※ 코로나-19 확산 상황에 따라 계약체결일이 연기될 수 있음.

3. 위탁사무

가. 시설 관리 및 운영

-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·운영 업무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

나. 프로그램 기획·운영 (2021년부터~)

-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-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

4. 인력구성(안) : 3명 [시설장, 사무원, 안전관리원(생활복지사 겸임)]

직 위	자격기준
시설장	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. ~ 8. (이하 생략)
사무원	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안전관리원 (생활복지사 겸임)	실내놀이터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, 단, 아래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.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

※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(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) 준수

- ※ 아래의 사람은 실내놀이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음
  -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(시설의 장) 및 제35조의2(종사자)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
  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
  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이 있는 자

5. 위 탁 금 : 금49,000,000원(금사천구백만원)

구 분	총 액(원)	비 고
인건비	40,000,000	3개월분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적립금,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포함
운영비	9,000,000	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
합 계	49,000,000	

- ※ 2020년 위탁금에 사업비 불포함(2021년 이후 사업비 편성 요구 예정)
- ※ 인건비는 서울특별시,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(기본급, 가족수당, 연장근로수당, 명절휴가비, 정액급식비, 관리자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)

6. 신청자격

- 가.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다.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[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]

-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아동복지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아동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
- ② 아동복지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③ 아동학과·아동복지학과·교육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아동 관련 활동(사업) 실적이 있는 대학(학교법인을 포함)

- ※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
  -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·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

※ 최소 충족 기준(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)을 적용하여, 미달 시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사 상정 제외

### 【 최소충족기준(Minimum) 】

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

#### ○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

- 최근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(민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 설립의 근거법령)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,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, 시설장 교체명령)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성폭력 등)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

#### ○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

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- 법인의 재정능력 등(기본재산·운영자금 등)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해지된 법인

## 7. 신청제외대상

- 법인 대표 및 시설장(내정자)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및 같은법 제35조(시설의 장)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법인

## 8. 위탁조건(운영조건)

-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, 아동복지법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,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,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
-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하며,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-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별도로 체결 후 공증함 (공증비용 수탁법인(단체) 자부담)
- 위수탁계약(협약)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함 (보증보험료 수탁법인(단체) 자부담)
- 수탁자는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·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함

## 9. 접수 및 제출 안내

가. 공고기간 : 2020. 9. 1.(화) ~ 9. 15.(화) [14일 간]

나. 접수기간 : 2020. 9. 11.(금) ~ 9. 15.(화) <토·일 제외, 09:00~18:00>

다. 제출방법 : 방문접수 (\* 우편접수 불가)

- 접 수 처 : 용산구청 5층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(이태원동, 용산구종합행정타운)
- 담 당 : 김혜리 주무관(☎02-2199-7013)

라. 제출서류

- ㉠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(붙임서식)
- ㉡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(붙임서식) 및 해당 증빙자료 일체 (결산서, 회계감사 보고서, 감독청 지도점검 결과 등)
- ㉢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(대표이사 인감증명서 포함)
- ㉣ 법인정관(목적사업에 아동복지 사업이 포함되어있어야 함)
- ㉤ 수탁신청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(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)
- ㉥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(법인자산현황, 잔고증명서 등)
- ㉦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신분증, 명함 지참)
- ㉧ 기타 수탁자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서류 등  
(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인(단체) 임직원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실적, 공모사업 참여 실적, 언론보도 등에 대한 증빙서, 법인사업 실적보고서,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등)

- ※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
- ※ 서식 상 최근 3년은 2017년부터 현재 기준임
- ※ 제출서류는 1권(쪽번호 명시)으로 편철해 합본 총 11부 제출  
(원본 1부, 심사용 사본 10부)
- ※ [가 ~ 아]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(USB에 저장)
- ※ 심사관련 사업계획 발표(PPT) 자료는 심사 3일 전까지  
이메일(hyekim@yongsan.go.kr)로 제출

## 10. 현장안내

- 가. 일 시 : 2020. 9. 10.(목) 14:00~16:00
- 나. 장 소 : 용산구 한강로3가 63-70, F동 2층(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丙)
- 나. 내 용 :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(공공형 실내놀이터) 현장 및 사업  
취지 등 안내
- 다. 유의사항 : 현장안내에 참석할 법인(단체)은 2020. 9. 9.(수) 17:00까지 신청  
(용산구 어르신청소년과 : ☎02-2199-7013)

## 11. 수탁자 선정 심사

- 가. 심사일시(예정) : 2020. 9. 23.(수) ※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
- 나. 심 사 자 :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
- 다. 심사기준 : 서울특별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(신규위탁) 준용 ([붙임] 참조)
- 라. 심사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
  - 서류심사 : 수탁신청시 제출한 서류 일체 확인 및 평가지표(비공개)에 따라 평가
  - 면접심사 : PT를 통한 제안서 발표
    - PT를 활용한 제안설명(15분내), 질의응답(10분내)
    - PT 발표는 법인대표 및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함
    - **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**,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, 시설장(내정자)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
- ※ **법인 운영 확인 등 필요시 관계공무원 현장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**

마. 선정방법 :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약 결렬 시 심의에서 결정한 차순위 법인으로 선정

※ 단, 차순위 법인이 평가점수 70점 이상 충족해야 하고 적격자 심사시 차순위 법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바. 선정결과 : 심의 후 개별통지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

사. 향후일정

- 선정 후 세부사항 협의 및 협약 체결
- 신청 법인(단체) 모두 부적격시 수탁법인 재공고

## 12. 기타 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

나.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을 경우 수탁자 재모집(공고) 실시

다. 심사 결과에 대해 수탁신청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(☎02-2199-70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의문사항 해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

## 서울특별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(신규위탁)

대항목	평가항목	배점
공신력 (40점)	1.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	5
	2.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 구성·운영 수준	15
	3.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	10
	4.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	10
	<b>공신력 합계</b>	<b>40</b>
재정능력 (20점)	1.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, 신뢰성	4
	2.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	6
	3. 법인의 회계투명성	10
	<b>재정능력 합계</b>	<b>20</b>
사업능력 (40점)	1. 지역자원 활용계획	10
	2.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	10
	3. 조직운영 계획	10
	4. 인사관리 계획	10
	<b>사업능력 합계</b>	<b>40</b>
계	<b>전체 합계(11개 항목)</b>	<b>100</b>
가산점 (7점)	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	7

※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으로, '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' 에서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(±5점 이내)이 있을 수 있음